

#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1236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5. 12.  
발 의 자 : 권태호 의원 외 10명

## 1. 주 문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, 「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,
- 2016년 6월말 준공예정인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차질 없는 시설물 이관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구성목적 :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촉구와 우리 구 관리대상 시설물의 차질 없는 이관 마련
- 나. 구성인원 :      명(희망하는 전 의원)
- 다. 활동기간 : 2016. 5. 12. ~ 2016. 12. 31.까지 (필요시 연장)
- 라. 운영방법 : 특별위원회에서 수시 결정 추진
- 마. 결과보고 : 활동기간 종료 전까지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

### 3. 제안이유

-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의 2016. 6. 30일 준공예정을 앞두고, 혁신도시내 각종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활동 등을 통해 차질 없는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
- 지역주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소음문제와 주차난 등의 각종 민원 해결 방안 모색과, 사업종료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확인으로 혁신도시 준공 전에 부진한 사업을 반영·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물 인수 후 우리 구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
- 중구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울산의 중심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

### 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

## 관련법규

### 【지방자치법】

-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  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

### 【지방자치법시행령】

- 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**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  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 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【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】

- 제7조(특별위원회)**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 
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.  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.  
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

## 의원발의 서명날인서

## ○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2016. 5. 11.(수)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

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지방 자치법 제  
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부. 끝.

발의자 : 울산광역시 중구의회

권태호 의원 외 10 명